

제 846호  
1981. 7. 10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박영수  
편집: 문화공보관 김진호  
전화: 75-7834  
간행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 
전화: 75-6090

# 시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250 호 :	도시계획시설 (학교, 유원지, 공원) 신설 및 변경 결정	3
제 251 호 :	도시계획시설 (수도) 결정 및 지적승인	4
제 252 호 :	도시계획시설 (공용청사) 결정 및 지적승인	4
제 253 호 :	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 변경	5
제 254 호 :	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, 농산물국용작물전용) 시행허가	5
제 255 호 :	도시계획사업 (종합의료시설)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	9
제 256 호 :	도시계획시설 (학교, 공원) 결정, 변경, 결정 및 지적승인	9
제 257 호 :	도시지적용도지구 (미판지구) 지적승인	10
제 258 호 :	도시지적용도지구 (미판지구) 지적승인	11
제 259 호 :	우교 제 8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인가	11
제 260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12
제 261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기간 연기승인	12
제 262 호 :	주택개발재개발사업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	13

<이면 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◎ 공 고	
제 155 호 : 제 11 회 서울특별시 관광연예품 경진대회 개최안내	13
제 160 호 : KS 표시 정기처분 해제공고	15
제 182 호 : 묘목및 종자수출 추천요령	15
제 307 호 (도봉구공고) : 동사무소 이전	16

◎ 사 령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0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, 유원지, 공원) 신설 및 변경 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(학교, 유원지, 공원) 을

도시계획법 제 12 조 규정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관한 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  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바과에 각각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1. 7. 4.

서울특별시 강

가. 도시계획시설신설 및 변경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	정	변 경 후	
신설	혜성여자 중, 상업 고등학교	동대문구전농동 90-3 일대	-	-	16,600 (5,021.5평)	기존학교
"	서울외국인학교	서대문구연희동 55-1 일대	-	-	54,800 (16,577평)	"
"	방배지역 국 교	강남구방배동 772 일대	-	-	11,570 (3,500평)	유원지 변경지
변경	사근국민 학교	성동구사근동 219 일대	16,119 (4,876평)	2,350.4 (감 711 평)	13,768.6 (4,165평)	
"	문 장 중 학교	관악구신대방동 366-133 일대	10,100 평 (3,055.2)	감 529 (감 160 평)	9,571 (2,895.2평)	사유주택 계획임
"	경기여자 고등학교	종로구신문로 2 가 139 일대	19,805 (5,991평)	감 3,200 (감 968 평)	16,605 (5,023 평)	재개발지 정실효
"	동 작 유원지	강남구방배동 786 일대 (구지번: 관악구동작동 1 번지)	71,012 (21,481평)	감 71,012 (21,481평)	0	재 지
신설	어린이 공 원	강서구화곡동 930-2, 3	-	-	1,107 (335 평)	

나. 시설결정도면: 별첨 (생략)
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1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수도) 결정 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수도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</p>	<p>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 7. 4 서울특별시 장</p>
---	--

○ 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신설	수도	도봉구쌍문동 137 의 59	151 ㎡	

\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2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결정 및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</p>	<p>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 7. 4. 서울특별시 장</p>
--	---

○ 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공용의청사	종로구무악동 7-1 번지	440 ㎡	

\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253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 변경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74 호 (80. 11.7) 로 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 일수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도시계획2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 7. 4 서울특별시장</p>	<p>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 시행허가</p> <p>1. 서울특별시공고제 152 호 (81.6. 1) 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 농산물 특용작물전용) 시행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 고시한다.</p> <p>2. 도시계획법 제 83 조의 규정에 의거 른 사업으로 인해 새로이 발생하는 공공시설 (도로) 은 당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시설 (도로) 은 이해자에게 무상 양도한다.</p> <p>3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 7. 4. 서울특별시장</p> <p>가. 사업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계기 동 1019 번지 외 8 필지 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 : 점동시장)</p>
<p>당 초 시 행 기 간</p> <p>착공예정일 : 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준공예정일 : '82.3.31</p>	<p>변 경 시 행 기 간</p> <p>착공예정일 : '80.11. 7 준공예정일 : '82. 3.31</p>
<p>○ 변경내용</p>	

<p>다. 사업의 면적 및 규모</p> <p>1) 부지면적                  시장: 5,059 ㎡ (1,530.34 평)                  도로: 901.16 ㎡ (272.6 평)</p> <p>2) 규모 (건물): 판매장 및 관리실                  1동 15,139.68 ㎡ (4,579.8 평)                  지하 2층 3,898.1 ㎡, 지하 1층 3,955.9 ㎡, 1층 2,354.4 ㎡                  2층 2,354.4 ㎡, 3층 2,354.4 ㎡                  옥탑층 222.48 ㎡</p>	<p>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36번지                  경동시장주식회사 대표이사 엄익재</p> <p>마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                1) 착수일: 1981.7.                  2) 준공일: 1982.12.30.</p> <p>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면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관계인의 주소, 성명:</p>
---	---

(제기동) 토 지 조 서

지 번	지 복	(총면적) ㎡ 수용될면 적 ㎡	소 유 자		이 해 관 계 인	
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1015	대	(1088.6) 185.0	제기동 1036  응신구이촌동 301-170 종로구명륜동 1가 32-2	"국"  경동시장 (주)  이재선  이훈돈	중구남대문로 2가 10-1	서울신탁 은행 "근저당 권설정"
1018	"	(940.8) 147.3	"	"		
1019	"	(1598.1) 1588.1	"	"		
1020	"	(190.1) 190.1	"	"		

지 번	지 목	(총면적) 및 수용면적	소 유 자		이 해 관 계 인	
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1021	대	(1047.9) 1047.9	종로구명륜동 1가 32-2	이 훈 돈		
			용산구갈월동 59-14	최 태 환		
			신설동 131-72	박 상 욱		
			제기동 424	이 윤 친		
			제기동 990-17	이 흥 봉		
			제기동 990	김 범 기	영등포구영등포동 640	조 신 맥 주 (주)
			제기동 990	박 증 철		
			제기동 990	이 강 홍		
			·	구 건 회		
			·	상 계 식		
			제기동 620-18	오 덕 식	중구 남대문로 1가 14	(주) 조 흥 은 행
			제기동 990	박 찬 권		
			도봉구창동 667-123	김 창 식		
			제기동 990	안 선 훈		
			·	이 광 호		
			제기동 623	김 수 배		
			제기동 990	신 천 우		
			·	이 종 우		
			제기동 22	박 승 덕		
			제기동 990	이 백 규		
·	양 정 순					
·	주 귀 철					
·	최 원 산					
·	김 경 수					
제기동 899	유 태 순					
제기동 990	유 영 부	영등포구양평동 4가 2	동방유량 (주)			

지 번	지 목	(종면적) 평 수용면적 평	소 유 자		이 해 관 계 인	
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1021	대		제기동 989	연병택		
1022	대	(1955.4) 1955.4	종로구 명륜동 1가 32-2	이훈돈		
1044	대	(614.2) 73.5	제기동 1036  종로구승인동 1063	경동시장 (주)  이종필	중구 남대문로 2가 10-1 (청량리지점)	서울 신탁은행 근저당권 설정
1045	대	(709.1) 74.3	제기동 1036  용산구 이촌동 301- 170  종로구 명륜동 1가 32-2	국  경동시장 (주)  이재선  이훈돈	중구 남대문로 2가 10-1  중구 충무로 1가 53-1 (청량리지점)	근저당권 설정 서울 신탁은행 제인은행 근저당권 설정
849	도로	(21,624.4) 730.0		서울 특별시		
제 8 필지		5,991.6		32명		



사. 도시계획법 제 83조규정에 의거  
준공후 귀속 및 양도될 재산의  
명세서

- 관리청 귀속
  - 계기동 1015번지 185.0㎡
  - " 1018 " 147.3㎡
  - " 1019 " 321.2㎡
  - " 1020 " 7.0㎡
  - " 1021 " 149.4㎡
  - " 1044 " 73.5㎡
  - " 1045 " 74.3㎡
  - 계 7필지 957.7㎡

- 사업자 귀속(양도) : 계기동  
849번지 730.0㎡

※ 정확한 면적은 준공시 측량  
성과도에 의해 가름함.

아. 공사설계도서 : 별첨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55 호

도시계획시설 ( 종합의료시설 )  
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 종합의  
료시설 ) 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 
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 
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 
제 463 호 ( 79.12.15 ) 에 의거 이  
를 고시한다.

1981. 7. 4

서울특별시장

시 설 변 경 조 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기 정	종합의료시설	도봉구공릉동 208-8 일대	50,324	
변 경	"	" 215-4 일대	47,805	감 2,519

※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 도면생략 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56 호

도시계획시설 ( 학교, 공원 ) 결정  
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 학교, 공  
원 )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, 제 13 조  
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 79.12.10 )

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, 변경결정 및  
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 
국 도시계획 1 과 및 관할구청 도시정  
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  
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7. 7

서울특별시장

가. 결정,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(㎡)	비 고
기정 변경	학 교 (국)	강남구영동아파트 제2-1주구내	14,000	위치변경 (기본계획 변경승인에 의함)
기정 변경	"	"	14,000	"
기정 변경	학 교 (중)	"	15,000	"
기정 변경	학 교 (고)	"	18,500	"
기정 변경	어린이공원	"	6,800	"

※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57호

도시계획용도지구 (미관지구)  
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00호 (81.4.4)로 결정된 도시계획 미관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건설고시 제 463호 (79.12.10)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

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·도시계획 1과와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7. 7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 미관지구 지적승인 조서					
구분	종별	연장	면적	위치	비고
신설	4	2,100 M	63,000 M <sup>2</sup>	동대문구전농동 63-장안동 147	양측 15M
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.				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58 호</p> <p>도시계획용도지구(미관지구) 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00 호(81.4.4)로 결정될 도시계획 미관지구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건설고시 제 463 호(79.12.10)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</p>			<p>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이를 고시 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1. 7. 7.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		
가. 도시계획 미관지구 지적승인 조서					
구분	종별	연장( )	면적( )	위치	비고
변경	2→4	90 M	2,700M <sup>2</sup>	답십리동 190 일대 - " 493 일대(전농천변)	양측 15M
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.				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59 호</p> <p>무교 제 8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인가</p> <p>서울특별시고시 제 243 호(78.5.26)에 의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무교 제 8 지구에 대한 사업 시행기</p>			<p>간을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제 2 항 동법 제 16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</p> <p>1981. 7. 8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		

가. 변경내용  
 사업시행기간  
 당초: 사업시행인가일 - 1981.6.30  
 변경: " 1983.9.30  
 사유: 건축주의 건축 계획 검토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60 호

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86 ( 78.5.1 ) 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 학교 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전설부고시 제 463 호 ( 79.12.10 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1. 7. 8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: 성북구돈암동 7 번지  
 나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 
 사업의 명칭: 학교법인 서라벌학  
 원 특별교실 개축  
 및 교교본관 증축  
 공사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
 사업시행면적 42,707 M<sup>2</sup>  
 바닥면적 1137,882 M<sup>2</sup>  
 증개축면적 1220,682 M<sup>2</sup>

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: 성북구돈암동 7 번지

학교법인 서라벌학원 이사장 사순선

- 가.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
 ㄱ) 착수년월일: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 
 ㄴ) 준공년월일: 1982. 7. 31  
 바. 허가번호: 서울시고시 제 260 호 ( 81.7.8. )  
 사. 위치 및 계획평면도: 별첨 ( 생략 )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61 호

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기간 연기 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1 호 ( 78. 7.12 ) 로 도시계획사업 ( 미림여자중고교 ) 시행허가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374 호 ( 80.12.12 ) 로 일부 준공점사를 필한 도시계획사업 미림여자중, 고교의 미준공부분 ( 관악구 신림동 산 67-4 ) 에 대한 사업 시행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기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

1981. 7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산 67-4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
 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미림여자중  
 고등학교 교지정지공사

다. 시행면적및규모: 5,637 ( 1,705평 )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
 재단법인 소화학원 이사장  
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
 1) 착공일자 : 80.8.15  
 2) 당초준공예정일 : 80.12.10  
 3) 1차연기 : 81.6.28  
 4) 2차연기 : 81.8.30

◎ 서울시고시제 262 호

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 
 변경결정

1. 건설부고시제 55 호 ( 81.2.20 ) 로  
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구역으로 결정  
 된 역촌구역의 3 개구역의 사업계  
 획 결정과
2. 건설부고시제 343 호 ( 78.11.11 )  
 로 사업계획 결정된 남가좌 3 구역의  
 사업계획변경 결정을 도시재개발법  
 제 5 조 규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 
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9 조 제 9 항  
 제 43 호 및 제 45 호에 의거 고시  
 한다.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국재  
 개발 2 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및  
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 
 에게 보인다.

1981. 7. 10

서울특별시장

가. 고시내역

( 단위 : ㎡ )

구역명	위 치	면 적	비 고
역 촌	은평구역촌동산	36,364	사업계
구 역	32의4번지일대		획결정
총 세	서대문구홍제동	20,220	
제 13 "	273 "		
원 제	도봉구월계동	8,241	
제 6 "	산 21 "		
상 제	도봉구상계동	239,000	
제 6 "	72 "		
남가좌	서대문구남가좌	47,710	가로망
제 3 "	동 105 "		조변

나. 사업계획도면 및 조서  
 별첨 ( 생략 )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55 호

제 11 회 서울특별시 관광민예술크  
 경진대회 개최 안내

제 11 회 전국 민예품 경진대회  
 개최에 따른 서울특별시 예선을 다  
 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출품하
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81. 6.

서울특별시

1. 목적

- 가. 민예품 산업의 개발육성
- 나. 새로운 제품 개발 및 보급
- 다. 지방민의 창의력과 학생의 아이디어 개발
- 라. 민예품의 상품화 및 수출기반 조성

2. 출품기간: 1981.7.27-7.31 (5일간)

3. 출품장소: 서울특별시 교동국 2층 회의실 (종로구 종로구청 소재)

4. 출품대상품목

- 가. 상품화가 가능하고 수출이 유망한 신개발 민예품
- 나. 고유한 기술과 전통에 바탕을 둔 민속공예품
- 다. 외국관광객의 기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광기념품

다. 기존제품에 대한 디자인 및 원부자재 개선 제품

5. 출품 제한 품목

- 가. 미풍양속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제품
- 나. 외국인 제품 및 모방품
- 다. 국내외 이미 상품화된 제품 및 모방품
- 라.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

6. 출품 및 반품절차

가. 출품원서(소정양식)의 출품작에는 명제, 용도, 제작자명 및 원부 자재의내용을 각각 국문, 한문, 영문으로 표기할 하여야 한다.

나. 출품작에는 국내 판매 예정가격 및 수출가격(FOB)을 명시하고 제작과정 및 특성 기타 필요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 
다. 반품절차: 낙선된 작품은 예선 종료후 5일 이내에 본인에게 반품함.

7.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

가. 심사결과발표: 81.8.11(화)

나. 시상

- 최우수상 1명 상장및부상 100만원
- 우수상 1명 " 60만원
- 장려상 2명 " 각20만원
- 노력상 3명 " 각10만원
- 가작 3명 " 각 5만원

8. 특 전

가. 입상작품 및 우수작품은 서울시 대표 작품으로 전국 민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함.

나. 본선입상자(장관상 이상)는 주최측의 경비 일부부담(항공료 지원)으로 해외 시찰기회를 부여 받음.

다. 본선 입상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민예품 전문생산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고 민예품 공동판매장에 입주할 수 있으며, 경영 및 기술 지도와 제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.

9. 문의처 :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국 관광과에 문의하시기 바람. (전화번호 723-1051, 725-6957)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60 호

KS 표시정지처분 해제공고

서울특별시공고제 160호(81.4.2)로

KS 표시 정지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해지하고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준해 이를 공고한다.

1981. 7. .

서울특별시장

1. 허가번호 2121
2. 허가일자 80.7.12
3. 제조업체명 (주) 환급
4. 대표자 윤홍명
5. 소재지 영등포구도림동 272-1
6. 품 명 주철 10kg/예플랜치형 그로브벨크
7. 규격번호 KS B 2351
8. 처분일자 1981.4.2
9. 종 류 40
10. 해제일자 81.7.1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82 호

묘목및종자 수출추천요령

81년도하반기 및 82년도상반기 수출입기별공고 총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시장의 수출추천품목에 대한 수출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1년 7월 10일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추천 대상품목

CCCN	추천 대상 품 목	비 고
0502	산림산업용 묘목 및 관상수 (구조·피·삼수·접수 및 지라경 포함). (단 산림수종 3년, 관상수 5년 이상의 대목, 관상분재, 묘포장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제외함)	
1203	산림산업용 및 관상수종자	

2. 추천대상자

- 가. 산림법 제 45조에 의한 종묘판매업 등록자
- 나. 산림조합중앙회
- 다. 대한 관상수 생산협회 회원
- 라. 동 품목은 수출 [위락수출포함] 한 실적이 있는자

3. 추천범위 및 기준

- 가. 서울특별시 수급잔여분에 한함.
- 나. CCCN 0602: 소나무류, 앞갈나무류, 잣나무류, 삼나무류, 편백, 리기테다, 밤나무, 호도나무의 품목은 사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을것.
- 다. CCCN 1203: 소나무류, 앞갈나무류, 잣나무류, 삼나무류, 편백,

리기테다의 종자는 사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을것.

4. 구비서류

- 가. 수출허가 (승인) 신청서 5부
- 나.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

부 칙

이 요령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◎ 도봉구 공고제 007 호

도봉구 상계 4동 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이전하여 공고함.

다 음

등 명	전 소 재 지	이 전 장 소	이 전 일 시
상계 4동	상계동 68-50	상계동산 161-7	81.7.1

1981. 7.

도봉구청장 유중호



**사 령**

◎ 1981.7.4 발령호수 249

지하철건설본부차장 강 덕 기  
지 방 부 이 사 판

서울지하철도공사 설립 추진요원에  
입함. (81.7.4 - 81.9.25)

중 구 민 방 위 과 김 승 목  
지 방 행 정 사 부 판

서울지하철도공사 설립 추진요원에  
입함. (81.7.4 - 81.9.25)

성 북 구 삼 선 2 동 박 용 호  
지 방 행 정 주 사

서울지하철도공사 설립 추진요원에  
입함. (81.7.4 - 81.9.25)

서대문구재무과 이 치 우  
지 방 행 정 주 사

서울지하철도공사 설립 추진요원에  
입함. (81.7.4 - 81.9.25)

지하철건설본부 윤 철 중  
지 방 행 정 주 사 보

서울지하철도공사 설립 추진요원에  
입함. (81.7.4 - 81.9.25)

서 울 특 별 시 장

◎ 1981.7.7 발령호수 251

주 택 공 사 과 이 기 장  
지 방 건 축 기 원
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서 울 특 별 시 상

◎ 1981.7.9 발령 제 252 호

성 명	발 령 사 함		현 부 서	직 급
	부 서	직 급		
장 석 준	종 로 구	행 정 주 사	종 로 구 산 업 과	지 방 행 정 주 사
이 길 석	동 대 문 구	"	동 대 문 구 "	"
정 환 복	중 구	행 정 주 사 보	중 구 "	지 방 행 정 주 사 보
신 태 식	동 대 문 구	"	동 대 문 구 "	"
김 홍 기	중 구	행 정 서 기	중 구 "	지 방 행 정 서 기
김 상 친	종 로 구	지 방 행 정 주 사	종 로 구 시 민 농 사 실	행 정 주 사
이 승 수	동 대 문 구	"	동 대 문 구 총 부 과	"
이 대 원	"	"	" 이 문 2 동	"
김 형 숙	중 구	지 방 행 정 주 사 보	중 구 사 회 과	행 정 주 사 보
박 성 열	"	지 방 행 정 서 기	" 청 소 과	행 정 서 기

서 울 특 별 시 상

© 1981.7.9 발령호수 253

주 택 행 정 과 입 완 규  
지 방 행 정 주 사

원 에 의 하 여 그 식 을 변 함.

서 울 특 별 시 장